

서울특별시교육청 각급학교 학생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I. 회부경위

1. 의안번호 : 제1366호
2. 발 의 자 : 김원태 의원 등 24명
3. 발의일자 : 2023. 10. 16.
4. 회부일자 : 2023. 10. 23.

II. 제안이유

-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PM)는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소지한 만 16세 이상만 이용할 수 있게 하였으나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지도 및 교육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III. 주요내용

1. ‘개인형 이동장치’, ‘인명보호장구’ 정의규정 신설 (안 제2조제5호·제6호)
2. 협력기관으로 “도로교통공단” 규정(안 제3조제1항제5호 신설)
3. 바퀴달린 놀이기구 중 “전동킥보드(PM)”를 삭제(안 제8조제1항제2호)

4.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시 안전지도 등 규정(안 제8조제1항제3호·제5호·제6호 신설)

IV. 참고사항

1. 관계법규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도로교통법」, 「아동복지법」
2. 예산조치 : 해당 없음(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별첨)

V. 검토 의견(수석전문위원 김창범)

1.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 동 개정조례안은 2023년 10월 16일 김원태 의원 등 24명의 의원 에 의해 의안번호 제1366호로 공동발의되어 2023년 10월 23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 동 개정조례안은 원동기면허 이상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만 16세 이상 학생 이용자의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지도 및 교육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규정을 마련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2. 주요 검토의견

가. 개정 취지에 대한 검토

- 최근 5년간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사고는 10.6배 증가하였고 해마다 사고 발생률과 사고건수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표-1] 최근 5년간 차종별 교통사고 현황¹⁾

가해운전자 차종별	사고년도	2018	2019	2020	2021	2022
전체 사고 합계	사고[건]	217,148	229,600	209,654	203,130	196,836
	사망[명]	3,781	3,349	3,081	2,916	2,735
	부상[명]	323,037	341,712	306,194	291,608	281,803
개인형이동장치(PM)	사고[건]	225	447	897	1,735	2,386
	사고비율	0.10%	0.19%	0.43%	0.85%	1.21%
	사망[명]	4	8	10	19	26
	부상[명]	238	473	985	1,901	2,684

- [표-1]에 따르면 전체 사고중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사고율이 매

1)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 도로교통공단, 경찰청, (https://taas.koroad.or.kr/web/shp/sbm/initUnityAnalSys.do?menuId=WEB_KMP_OVT_UAS) 방문(2023.12.12.)

년 급격하게 증가되는 상황인 바, 이에 정부는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방지를 위해 2021년 「도로교통법」을 개정²⁾하여 원동기 면허 없이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할 수 없게 하였으며, 안전모를 의무적으로 착용하도록 하고 승차 인원도 제한하였습니다.

- 그러나 이와 같은 강화된 법적 규정에도 불구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는 지속적으로 증가되어 왔고, 이중 16~20세 학생의 경우에 개인형 이동장치 주행사고가 더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³⁾
- 따라서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통안전교육 내용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에 관한 안전 수칙 및 보호장구 착용 지도와 교통법규 및 기초질서 준수 지도를 명기한 것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에 있어 학생의 안전의식을 향상시켜 안전사고 감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나. 주요 조문별 검토

1) 정의 규정에 대한 검토(안 제2조제5호,제6호)

- 안 제2조제5호는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정의를 「도로교통법」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고, 안 제6호에서는 인명보호장구에 대한 정의를 같은법 시행령에 따라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처럼 상위법률에 규정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과 용어의 통일성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별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2) 협력단체 추가에 대한 검토(안 제3조제1항제5호,제6호)

2) [시행 2021. 5. 13.] [법률 제17891호, 2021. 1. 12., 일부개정]

3) “‘킵라니 사고’급증...‘1020세대,절반 이상[2023국감]”,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2023.10.10. 기사 참조

- 안 제3조는 제5호에 규정된 **교통안전 교육시설 및 관련단체**를 삭제하고 **도로교통공단(안 제5호)**과 **교통안전 관련 단체(안 제6호)**를 협력단체의 범위로 추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 현재 도로교통공단은 운전면허서비스와 함께 각종 교통사고 통계 및 사고예방, 그리고 다양한 교통안전교육 등을 진행하는 공공기관으로서 공단의 주요사업을 고려하였을 때 학생의 통학로 교통안전에 관한 협의체에 포함시키는 것은 별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그러나 안 제6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통안전 관련 단체**’는 동 조례 제3조제1항제5호에 규정된 ‘**교통안전 교육시설 및 관련 단체**’에 의미상 포함되는 것으로 생각되는바, 이에 대한 삭제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표-2] 2023년 ‘도로교통공단’에서 진행한 어린이 교통안전 관련 사업 현황

구분	날짜	사업명	사업내용
1	2023.3.2.~5.24.	알콩달콩 어린이 뮤지컬 대회	도로에서의 교통사고 예방 교육 관련 자유 주제로 교통안전 뮤지컬 개최
2	2023.3.28	어린이 교통사고 ZERO 캠페인	어린이 교통공원에서 서울송파경찰서, 서울녹색어머니연합과 함께 야간에 어린이 교통사고의 취약성에 대해 강조
3	2023.5.4.	어린이 교통사고 ZERO 캠페인	서울어린이대공원 광장에서 탐텐키즈와 함께 공동으로 제작한 캠페인 티셔츠를 배부
4	2023.5.10	첨단통신기술을 활용한 어린이 교통안전강화 토론회	국회 의원회관에서 박완주 국회의원을 비롯한 유의동, 이태규, 문진석 국회의원이 주최한 어린이알리미장치를 활용한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방안 모색
5	2023.5.11~5.13.	2023 서울안전한마당 체험부스 운영	여의도공원 문화의 마당에서 서울시가 개최하는 ‘2023년도 서울안전한마당’에 참여해 어린이, 음주운전, 전동킥보드 교통안전 체험 부스 운영
6	2023.5.16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 업무협약	도로교통공단 서울지부에서 동화약품과 업무협약을 맺고 어린이 보행 물품인 오렌지카드를 제작 및 배포함
7	2023.5월~12월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육 진행	교육부, 소방청과 함께 도서·읍면 및 도시 외곽지역 학교 대상으로 모형신호등, 모형횡단보도, AR체험 등을 활용해 체험형 교통안전교육 실시

8	2023.5월 ~12월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멈춤 캠페인'	SK가스와 함께 어린이통학버스 안심정류장 조성
9	2023.5월 ~6.21	제2회 전국 어린이 교통 안전 말하기 대회	TBN교통방송이 주관하고 국회·교육부·경찰청·손해보 험협회·생명보험협회가 후원하여 어린이들이 직접 어린이 교통안전과 관련된 자유 주제로 발표하는 말하기 대회를 개최
10	2023.7.10	원주 댄싱 카니발 '교통안전 체험부스 운영'	원주지역 축제 '2023 댄싱카니발'에서 가족동반 어 린이 방문객을 대상으로 안전한 횡단보도 건너기 체험 교육 실시
11	2023.7.10	교통안전 국정과제 성공 이행 다짐대회	전국 52개 조직장 및 노동조합 대표 등이 함께 하 는 2023년 전국조직장 역량강화교육에서 어린이가 안전한 보행로와 통학로 만들기에 노력
12	2023.7.14 ~9.8.	2023 교통안전 홍보작품 공모전	경찰청과 함께 '보행자와 운전자가 안전한 도로 위 교통문화 만들기'를 주제로 광고 영상 분야, 포스터 분야, 사진 분야 모집
13	2023.9.18	어린이 교통안전 홍보 업무 협약(MOU) 체결	행정안전부, 교육부, 경찰청, 학교교통안전공단, 초 록우산어린이재단 등이 모여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어린이 우선 교통안 전 문화 정착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14	2023.11.14	'한국교통법학회' 추계 학술 대회 참가	'2023년 한국교통법학회 추계 학술대회'에서 어린 이 교통안전과 도로교통환경 변화에 대한 대비 주 제로 발표 및 토론 참가

3) 교통안전교육에 대한 검토(안 제8조제1항)

■ 안 제8조제1항제2호에 대한 검토

- 안 제8조제1항은 제2호에 적시된 '바퀴달린 놀이기구(킵보드, 인라인스케이트, 전동킵보드(PM), 바퀴달린 신발)' 중에 괄호안에 예시로 들은 전동킵보드(PM)를 삭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바퀴달린 놀이기구' 라는 용어는 다른 법률에도 정의되어 있지 않은, 일상적으로 통용하는 용어로서 그에 해당하는 기구를 괄호안에 예시로 적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괄호안에 '바퀴달린 놀이기구' 의 예시로 적시한 '킵보드, 인라인스케이트, 전동킵보드(PM), 바퀴달린 신발' 중 전동킵보드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의34)에 '개인형 이동장치' 의 하나

로 규정되어 있는 바 ‘바퀴달린 놀이기구’의 예시에서는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또한 기존 조례에서는 전동킥보드를 ‘전동킥보드(PM)’로 규정하였는데 ‘PM’이란 Personal Mobility를 뜻하며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1~2인승 소형 이동수단을 의미합니다.

전동킥보드가 PM의 대표적인 이동수단 중 하나이지만 PM에는 전동 휠, 전기 자전거, 초소형 전기차 등이 있는 바, 전동킥보드를 PM인 것으로 표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 제8조제1항제3호에 대한 검토

- 안 제8조제1항제3호는 교통안전교육 내용으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시 안전 운행 및 인명보호장구 착용 지도’를 추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 2021년 1월 12일 「도로교통법」을 개정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시 운전자의 주의의무를 강화하였습니다.⁵⁾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자는 주행 시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해야 하며 한 대에 두 명 이상 탑승을 금지하고 있으며 안전모 미착용시에는 2만원, 승차정원 초과 탑승 시에는 범칙금 4만원을 내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교통안전교육의 내용으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시 안전 운행 및 인명보호장구 착용 지도를 추가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4) 제2조의3(개인형 이동장치의 기준) 법 제2조제19호의2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 신고가 된 것을 말한다.

1. 전동킥보드

5) 「도로교통법」 제50조(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④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 및 「도로법」에 따른 도로를 운전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여야 하며, 동승자에게도 이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 안 제8조제1항제5호에 대한 검토

- 안 제8조제1항제5호는 교통안전교육 내용으로 ‘교통법규 및 기초 질서 준수에 관한 지도’ 를 추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 ‘교통법규 및 기초질서 준수에 관한 지도’ 는 학생들에게 도로교통법 등 교통안전 관련 법규의 주요내용을 교육하고, 관련 법규가 개정되었을 때 그 변경된 사항을 지도하는 것으로 교통법규 변경사항을 지도하는 것은 별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 안 제8조제1항제6호에 대한 검토

- 안 제8조제1항제6호은 교통안전교육 내용으로 ‘교통사고 등 안전사고의 위험성 및 예방대책 안내’ 를 추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동 조례는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로서 ‘교통사고’ 외에 여타 안전사고를 포함할 경우 규율범위가 조례의 제정범위를 넘어서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교통안전을 목적으로 제정된 동 조례의 취지에 맞게 ‘교통사고 등 안전사고’ 를 ‘교통사고’ 로 한정하여 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참고로 서울시교육청은 동 조례안과 관련하여 “의견없음” 을 제출 하였습니다.(행정관리담당관-15379.,2023.10.27.)

□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각급학교 학생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심사지원팀장	정진국 (2180-8263)	입법조사관	이성운 (2180-8266)
----------	--------------------	-------	--------------------

관계 법령

도로교통법

[시행 2023. 10. 19.] [법률 제19357호, 2023. 4. 18., 일부개정]

제50조(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④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 및 「도로법」에 따른 도로를 운전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여야 하며, 동승자에게도 이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0조(운전면허) ①자동차등을 운전하려는 사람은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2조제19호나목의 원동기를 단 차 중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통약자가 최고속도 시속 20킬로미터 이하로만 운행될 수 있는 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시·도경찰청장은 운전을 할 수 있는 차의 종류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전면허의 범위를 구분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전면허의 범위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1. 제 1종 운전면허

- 가. 대형면허
- 나. 보통면허
- 다. 소형면허
- 라. 특수면허
 - 1) 대형견인차면허
 - 2) 소형견인차면허
 - 3) 구난차면허

2. 제2종 운전면허

- 가. 보통면허
- 나. 소형면허
- 다.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제82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 1. 18세 미만(원동기장치자전거의 경우에는 16세 미만)인 사람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약칭: 학교안전법)

[시행 2022. 3. 25.] [법률 제18463호, 2021. 9. 24., 일부개정]

제8조(학교안전교육의 실시) ①학교장은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에게 학교안전사고 예방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교육(이하 “안전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학기별로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1. 「아동복지법」 제31조에 따른 교통안전교육, 감염병 및 약물의 오남용 예방 등 보건위생관리교육 및 재난대비 안전교육
- 2.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교육
- 3.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성폭력 예방에 필요한 교육
- 4.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성매매 예방교육

5. 「초·중등교육법」 제23조에 따른 교육과정의 체험중심 교육활동으로 운영되는 경우 이에 관한 안전사고 예방 교육

6. 그 밖에 안전사고 관련 법률에 따른 안전교육

②삭제 <2015. 1. 20.>

③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교육에 필요한 교재와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학교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교육을 담당할 강사를 알선하는 등 안전교육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1. 안전사고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사항
2. 재난대비 훈련 및 안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학교장은 필요에 따라 안전교육을 이론교육과 실습교육으로 병행하여 실시하되, 안전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교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로서 하여금 담당하게 하거나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교육기관·단체 또는 전문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아동복지법

[시행 2023. 11. 9.] [법률 제19605호, 2023. 8. 8., 일부개정]

제31조(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 ①아동복지시설의 장,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원장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은 교육대상 아동의 연령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대상이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영유아인 경우 아동복지시설의 장, 같은 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원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외부전문가로 하여금 제1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하게 할 수 있다.

1. 성폭력 예방
- 1의2. 아동학대 예방
2. 실종·유괴의 예방과 방지
3. 감염병 및 약물의 오남용 예방 등 보건위생관리
4. 재난대비 안전
5. 교통안전